

|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5782     |
| 의 퇴 인  | 박주민의원       |
| 회 답 일  | 2025.02.16. |
| 추 계 번호 | 24C5346     |

#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**국회예산정책처**  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와 사실조사를 위한 피해보상반을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,900만원씩 향후 5년간 총 9,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\ 연도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-----|
|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| 19   | 19   | 19   | 19   | 19   | 96 | 19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(손실의 보상, 의료비 지원 등)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와 사실조사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3조<br>(국가의 책무)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는 의료대란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,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5조<br>(손실의 보상)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는 의료대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(제1항)</li> <li>○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짐(제2항)</li> <li>○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은 의료대란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</li> </ul> | 의무규정 |
| 3  | 안 제6조<br>(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대란과 관련하여 국가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(이하 “보상위원회”)를 둔(제1항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3 | 안 제6조<br>(의료대란피해보<br>상위원회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2항)</li> <li>○ 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, 위원은 보건정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함(제3항)</li> <li>○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(제4항)</li> <li>○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구성,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6항)</li> </ul> | 의무규정 |
| 4 | 안 제9조<br>(사실조사)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상위원회는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음(제1항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5 | 안 제15조<br>(재심위원회)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둠(제1항)</li> <li>○ 재심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사실조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함. 이 경우 “보상위원회”는 “재심위원회”로 봄(제2항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6 | 안 제16조<br>(의료비 지원 등)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 외에 의료비, 사망위로금 등 급여를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</li> <li>○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종류, 지급 방법·기준·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3조<br>(국가의 책무)          | ×    | 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가 어려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5조<br>(손실의 보상)          | ×    | ○ 국가가 의료대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만, 보상금의 기준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 합리적인 추계를 하기 어려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6조<br>(의료대란피해보상<br>위원회) | ○    | ○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9조<br>(사실조사)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안 제15조<br>(재심위원회)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안 제16조<br>(의료비 지원 등)       | ×    | ○ 국가가 의료대란 피해자에게 의료비, 사망위로금 등의 급여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지만, 급여의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은 정부의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실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참고로,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는 2023년 12월 10일 관심단계, 2024년 2월 6일 경계단계를 거쳐 2024년 2월 23일 심각단계로 격상됨

- 제정안은 질병관리청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하므로, 향후 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현황, 실제 피해보상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 -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와 사실조사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피해보상반 운영을 준용하여 추계<sup>1)</sup>
    -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위원회로 국가예방접종의 경우 분기별, 코로나 예방접종의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
    - 또한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전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피해조사관의 자문을 받는 피해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, 위원회와 피해조사반 운영 등을 위해 2025년 기준 5억 400만원을 배정함
  - 안 제15조에 따른 재심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재심에 대한 안건을 함께 다루는 것으로 가정
    -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있음
  - 참고로, 의료대란에 따른 피해신고는 2024년 2월 전공의 사직 직후 9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월에는 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됨

1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1조(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)

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·치료 의약품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·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1.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: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

2. 장애인이 된 사람: 일시보상금

3. 사망한 사람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

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,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·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·치료 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.

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,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,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표 2] 피해신고지원센터 유형별 접수 현황

(단위: 건)

| 구분  | 총<br>상담<br>건수 | 피해신고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의료이용<br>불편상담 | 단순질의  | 법률상담<br>지원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    |               | 소계   | 수술자연 | 입원자연 | 진료차질 | 진료거절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누계  | 5,725         | 924  | 504  | 44   | 220  | 156  | 1,026        | 3,417 | 358        |
| 2월* | 783           | 343  | 256  | 15   | 39   | 33   | 206          | 145   | 89         |
| 3월  | 1,197         | 259  | 147  | 12   | 69   | 31   | 231          | 564   | 143        |
| 4월  | 685           | 101  | 42   | 7    | 25   | 27   | 115          | 412   | 57         |
| 5월  | 501           | 50   | 17   | 3    | 18   | 12   | 99           | 326   | 26         |
| 6월  | 560           | 70   | 21   | 1    | 30   | 18   | 133          | 335   | 22         |
| 7월  | 333           | 19   | 5    | 2    | 6    | 6    | 41           | 268   | 5          |
| 8월  | 278           | 31   | 6    | 2    | 13   | 10   | 46           | 190   | 11         |
| 9월  | 370           | 17   | 3    | 0    | 6    | 8    | 45           | 305   | 3          |
| 10월 | 327           | 13   | 5    | 1    | 6    | 1    | 48           | 264   | 2          |
| 11월 | 345           | 12   | 2    | 1    | 3    | 6    | 37           | 296   | 0          |
| 12월 | 346           | 9    | 0    | 0    | 5    | 4    | 25           | 312   | —          |

주: 2024년 12월 26일 기준

자료: 보건복지부

-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제정안에 따라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(안 제6조)를 설치·운영하고 사실조사(안 제9조)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조사반을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함
- 추가재정소요는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사실조사를 위해 위촉된 자문위원(피해조사관)에게 지급하는 참석 수당을 추계<sup>2)</sup>

2) 이외의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경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

- 민간위원 수에 참석 수당 단가 및 연간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
  - (위원 정수)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위원회 민간위원 수는 제정안에 따른 15인 중 위원장을 제외한 14인으로 가정하고, 사실조사를 위한 자문위원(피해조사관)은 질병관리청 사례를 준용하여 10인으로 가정
  - (회의 횟수)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 - (참석 수당 단가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<sup>3)</sup>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운영 예산을 준용하여 2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제정안에 따라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와 사실조사를 위한 피해보상반을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,900만원씩 향후 5년간 총 9,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3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연도<br>구분           | 2026      | 2027      | 2028      | 2029      | 2030      | 합계        | 연평균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(안 제6조) | 11        | 11        | 11        | 11        | 11        | 56        | 11        |
| 사실조사(안 제9조)        | 8         | 8         | 8         | 8         | 8         | 40        | 8         |
| <b>합계</b>          | <b>19</b> | <b>19</b> | <b>19</b> | <b>19</b> | <b>19</b> | <b>96</b> | <b>19</b>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.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,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## 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임슬기 | 이진우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임슬기 | 02-6788-4740 | sg.lim@assembly.go.kr |